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상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513

발의연월일: 2024. 9. 2.

발 의 자:김상욱·조은희·이달희

서범수 · 조지연 · 김선교

정동만 • 백종헌 • 박준태

서천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성범죄 수법이 교묘해지고 청소년들의 정보 통신망 상 활동이 용이・활발해지는 환경을 고려하여, 아동・청소년 대상 성적 착취 목적의 접근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이 예 방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'21.3월 '온라인 그루밍' 처벌 근거가 신설되 었음. 그러나 현행 처벌 대상은 정보통신망 상에서 아동・청소년을 성 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속・반복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 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하거나, 성적 행위를 유인・권유 하는 행위로 한정되어 있음.

이에 따라 온라인 상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이후 오프라인 상 만남으로 이어져 성착취 유인·대화 또한 발생 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라처벌 범위를 넓혀 범죄 예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(안제15조의2 및 안 제25조의2).

법률 제 호

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·청소년"을 "아동·청소년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"를 "16세"로 한다.

제25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11조의 죄

1의2. 제15조의2의 죄(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·청소년에게 한 행 위에 한정한다)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
제15조의2(아동・청소년에 대한	제15조의2(아동・청소년에 대한								
성착취 목적 대화 등) ① 19세	성착취 목적 대화 등) ①								
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									
적으로 <u>정보통신망을 통하여</u>	<u>아동·청소년</u>								
<u>아동·청소년</u> 에게 다음 각 호									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									
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									
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									
에 처한다.									
1.・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								
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<u>정보통</u>	② <u>16세</u>								
<u>신망을 통하여 16세</u> 미만인 아									
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									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									
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									
로 처벌한다.									
제25조의2(아동・청소년대상 디	제25조의2(아동・청소년대상 디								
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) ①	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) ①								
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									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(이									
하 "디지털 성범죄"라 한다)에									
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									
죄현장(정보통신망을 포함한									
다)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									

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(이하 "신분비공개수사"라 한다)할 수 있다.

- 1.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죄<신 설>
- 2. (생략)
- ②·③ (생 략)

 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
	_		_							_		_		_								_
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

----.

- 1. 제11조의 죄
- 1의2. 제15조의2의 죄(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·청소년에게 한 행위에 한정한다)
- 2. (현행과 같음)
-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